<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 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 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 아</u> <u>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12010058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12.10.29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5.04.15

ayfc@americayoga.co.kr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정 보 공 개 서

(주)아메리카요가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아메리카요가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17길 51, 7층(관철동)

전화: 02-516-9999 팩스: 02-517-5252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2-516-9999

목 차

Т	フレロト	4	ᆸᇬ	일반	정하
1.	/ I Ċ	; 	てご	= T'	アマ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 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 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 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o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아메리카요가 (America Yoga)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17길 51, 7층(관철동)				7층(관철동)
(주)아메리카요가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	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	번호	대표팩스번호
	2010.08.05	201	0.10.01	윤종혁	02-516-9	999	02-517-5252
			1-4407725 사업자등록번호		10	101-86-5914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ㅇ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내이사 윤종혁 (4 : 1)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17길 51, 7층(관철동)			
사내이사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America Yoga)	윤종혁	02-516-9999	02-517-5252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ο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 • 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	-	-	-	-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	-	-	-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라 합니다)의 내용

ㅇ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상 호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OO점	
그 밖의 영업표지	A M E R I C A YOGA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	2,711,021	1,231,592	1,479,429	2,112,902	-723,059	698,835
2023	2,502,315	1,020,350	1,481,964	1,837,707	13	2,535
2024	2,350,040	1,229,491	1,120,549	1,727,940	-510,422	-361,415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ㅇ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직영점포함)은 재무상황과 동일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o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원인역구	이듬	연 역귀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윤종혁	대표	2010.08.05~현재	(주)아메리카요가 사내이사	업무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o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시엄	상근	비상근	역전구(8)
2024년 12월 31일	1	-	1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ㅇ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ㅇ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o 당사의 상표 서비스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관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п. 가맹본부의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가맹사업 현황

1.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을 시작한 날 : 2009년 9월

2.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아메리카요가	아메리카핫요가 (America Hot Yoga)	윤종혁	2009.09 ~ 2012.09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7-12 고운빌딩 3층
(주)에이치나인헬스케어	아메리카핫요가 (America Hot Yoga)	윤종혁	2012.09 ~ 2013.03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31
(주)에이치나인헬스케어	아메리카핫요가 (America Hot Yoga)	손민우	2013.03 ~ 2013.05	(삼성동,고운빌딩3층)
(주)아메리카요가	아메리카핫요가 (America Hot Yoga)	윤종혁	2013.05 ~ 2014.05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81-15 필빌딩지하 101
(주)아메리카요가	아메리카요가 (America Yoga)	윤종혁	2014.05 ~ 2017.01	서울 강남구 선릉로 314, 제지1층 제비01호(대치동)
(주)아메리카요가	아메리카요가 (America Yoga)	윤종혁	2017.01 ~ 2017.09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94, 502호 (여의도동,우정빌딩)
(주)아메리카요가	아메리카요가 (America Yoga)	윤종혁	2017.10~2020.06.29	서울 성동구 성수이로 51, 307호, 308호(성수동2가, 서울숲한라시그마벨리)
(주)아메리카요가	아메리카요가 (America Yoga)	윤종혁	2020.06.30 ~ 2022.06.09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7 길 49, 1209호 1210호(성 수동2가, 생각공장 데시앙 플렉스)
(주)아메리카요가	아메리카요가 (America Yoga)	윤종혁	2022.06.10. ~ 2023.12.14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7 길 49, 11층 1120호(성수 동2가, 생각공장 데시앙플 렉스)
(주)아메리카요가	아메리카요가 (America Yoga)	윤종혁	2023.12.15. ~ 현재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17 길 51, 7층(관철동)

3.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업종

영업표지	업종				
아메리카요가	대분류	소분류			
(America Yoga)	스포츠(요가)	요가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TIM		2022.12.31			2023.12.31			2024.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31	27	4	23	18	5	21	18	3	
서울	31	27	4	18	18	5	17	17	3	
부산	_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_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_	-	-	-	-	-	-	-	-	
울산	_	-	-	-	-	-	-	-	-	
경기	-	-	-	-	-	-	1	1	-	
강원	_	-	-	-	-	-	-	-	-	
충북	_	-	-	-	-	-	-	-	-	
충남	_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_	-	-	-	-	-	-	-	-	
경북	_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세종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28	1	-	2	-	27
2023	27	1	4	6	1	18
2024	18	3	1	2	2	18

6.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ㅇ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한 해 동안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말		2024년 기	가맹점사업자	·의 연간 평균	균 매출액		산출
지역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가맹점수
전체	18	236,967	3,982	385,335	8,056	76,103	1,358	18곳 산정
서울	17	239,383	3,939	385,335	8,056	76,103	1,358	17곳 산정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경기	1	-	-	-	-	-	-	5곳 미만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세종	-	-	-	-	-	-	-	-

- o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POS 전산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연간 매출로 환산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o 가맹점이 5곳 미만인 지역은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o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아메리카요가]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2024년	18	2,000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ㅇ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ㅇ 당사에서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과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간 (단위:		지출 비용 천원, 부가세 미포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78,285	78,285	-		
광고	인쇄물 등	2024.01 ~2024. 12.	78,285	78,285	-		

11. 가맹금 예치

o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KEB하나은행 (773-910013-51304) 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KEB하나은행	이태원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27	02-794-1111

- ㅇ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KEB하나은행에 계약 체결일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귀하가 KEB하나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예치하는 방법은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아메리카요가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o 귀하는 또한 KEB하나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 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o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아메리카요가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비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o 귀하가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	해당없음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30,500				
가맹비	25,000	계약 체결일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계약금 성격의 금전	양수 가맹 점의 경우 11,000
교육비	5,500	계약 체결일	교육 전 계약해지 시	교육시작 후	

2) 당사는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30,500
가맹비	25,000
교육비	5,5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²당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92,000	1,840			165㎡(50평) 기준
인테리어	가맹본부	72,500	1,450			
간판	협력업체	5,500				
냉난방기	가맹본부	4,950		계약 또는	공사/공급	
핫요가 시스템	가맹본부	4,400		물품입고 시	전	
전산용품	가맹본부	1,650		호요 다고 시	계약취소	
소모품	가맹본부	3,000				
POS	협력업체	임대			2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인테리어 디자인 및 설비 시공 시 검수비로 3.3m²당 220,000원 (VAT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o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ㅇ 기타 지원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 및 사항은 별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ㅇ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지역지정→ 가맹희망자 직접조사 또는 가맹희망자 가 전문업체에 의뢰 → 당사 및 가맹희망자가 동의 시 확정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o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 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만20세 이상일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요가지도자, 매니저	당사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	만18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ㆍ 공급업체
- o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ㅇ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550	매월 15일	반환없음	후불제	
영업지원비	가맹본부	영업지원 하는 매출액 기준 20%	협의된 기간 중 매월 15일에 정산하여 3일 이내	반환없음	후불제	최소1개월~ 최고3개월까지 영업지원(개월 수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POS 사용료	협력업체	5.5	매월 10일	-	사용된 비용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실비	광고 실시 전	광고시행 이전	광고 시행 이후	
인터넷 공통홍보비	가맹본부	660	익월 15일	-	사용된 비용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추후 공지	별도 공지	교육 전	교육 후	
지도자관리비 (요가강사)	가맹본부	110	매월 15일	반환없음	지도자관리비 로 소요	
공공배상책임 보험	보험사	-	-	-	-	세부내용은 가맹본부 및 보험사와 협의하여 결정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자급하는 날까지			정해진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전산관리비	가맹본부	110		반환없음	전산관리비로 소요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4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o 당사는 귀하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등을 점검하고 가맹본부가 정한 규정 이외의 서비스 취급 여부, 서비스 상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ㅇ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점의 재고관리,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등이나 기타 점포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o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재가맹비	2,200	갱신일까지	재계약 이후 미반환	-	재계약일 기준

- *다수(2개이상) 가맹점을 운영할 경우 2개 매장부터 재 가맹비 50%할인 적용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o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o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개발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가맹점사업자의 간판 변경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o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 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귀하가 운영하는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로부터 승인받은 양수인은 교육비(₩2,000,000<부가세별도>)를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비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o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즉시 당사의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며(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역정보 등 인터넷상의 사용도 포함), 당사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자료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 o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종료 7일 전까지 자신이 모집한 회원들과의 회원 계약관계 종료 증빙 및 잔여기간 회비 처리내역 등이 포함된 '회원권 반환 처리 내역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가맹계약 의 종료일까지 회원권의 반납분, 강사나 직원의 급여, 갑에 대한 잔존채무의 지급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 o 가맹점사업자가 제출한 '회원권 반환 처리 내역서'와 회원명부를 대조하여 회원들의 잔여기간에 따른 비용 반환의 완료를 확인하고 반환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회원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잔여 반환금액에 따른 보증금 요청 및 인근 센터로의 회원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이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회원권 반납 절차를 완료 하여야 합니다.
- o 가맹계약 해지시 가맹점사업자는 폐점 또는 브랜드의 변경, 독립적인 계속적 운영에 대하여 회원 대상으로 30일이상 아래 내용으로 사전고지 해야 하며, 가입된 회원에게 이용일을 제외한 남은 일수를 정산하여 가맹점사업자는 회원에게 환급 해야 합니다.
 - 1. 가맹계약해지에 대한 사전고지 내용은 폐점 또는 독립적인 계속적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가맹계약 종료일, 환불방법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게시방법은 데스크, 파우더룸, 게시판, SMS를 통해안내 한다.
 - 2.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에 가입된 회원에게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일주일전까지 가맹계약 해지 사실을 SMS를 통해 2회 이상 알려야 한다. 단 점주가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보낸 SMS안내는 발송된 시점부터 환불기간은 15일간 연장되며 가맹계약 종료와 무관하게 환불해주어야 한다.
- o 가맹점사업자가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당사는 회원들의 회원권 잔여기간에 따른 반환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받은 보증금에서 반환하도록 하며, 모든 회원들의 이용기간이 만료 되면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 보증금에서 반환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o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ο 귀하가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o 귀하는 영업에 필요한 물품 및 상품을 당사의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공급받을 물 품 및 상품의 범위는 가맹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o 위 품목은 모두 권유 품목이며,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서 구매하기를 원하는 경우 상.하한 없이 고정 금액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특수관계인이 없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0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0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용역의 판매 제한
- o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당사가 제시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기재된 제품 이외는 판매 불가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문의 : 당사 (02-516-9999)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o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귀하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o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 거래상대방에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해당제품 판매 불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ㅇ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

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o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o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1, 별첨2와 같습니다.
- o 귀하가 별첨1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혐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o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o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하 어조 버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요가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아메리카요가	-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o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가맹계약서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o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재조정 등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 그 병격되 계약	가맹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도이업브 히시 도이가 있느 경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이 귀하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영업지역에서 판매책임(목표매출)을 달성하고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을 것둘째, 타 지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시행 해 회원이 모집될 경우해당지역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 보상금으로 회원권 가격의 20%를 지급할 것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 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u>84.42%</u>	<u>15.58%</u>	<u>0%</u>	<u>0%</u>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u>0%</u>	<u>0%</u>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o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계약기간의 연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비를 납부하면 매년 자동으로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 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 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 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ㅇ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0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0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으로서 을이 다음 각 목의 중요한 영업방침 중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아니한 경	
	우	
가)) 가. 을의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	
	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34조 3항
나)) 나. 갑의 가맹사업 브랜드 보호와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조기법, 판매	
	기법, 판매규정(MPL)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다. 갑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	
	한 사항	
라)) 라. 갑이 을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을이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	
	이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ㅇ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5조 1항
0	가맹계약서 제4조 가맹점의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0	가맹계약서 제11조 영업지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0	가맹계약서 제14조 인테리어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0	가맹계약서 제15조 교육 및 인력관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0	가맹계약서 제16조, 제41조에 따라 보험가입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35조 1항
0	가맹계약서 제18조 영업의 표준화와 임의적으로 판매가격을 변경한 경우	35조 1항
0	가맹계약서 제18조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에 대한 환불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35조 1항
	않거나, 부당한 환불문제로 인하여 회원이 본사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3371.19
0	가맹계약서 제18조 규정에서 정한 회원의 지점간 공유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35조 1항
	거절하거나 회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경우	3371.19
0	가맹계약서 제19조 영업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0	가맹계약서 제20조 복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0	가맹계약서 제21조 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0	가맹계약서 제26조 광고 및 판촉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0	가맹계약서 제27조 보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0	가맹계약서 제28조 영업비밀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0	가맹계약서 제29조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0	가맹계약서 제30조 감독 및 시정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0	가맹계약서 제32조 영업의 양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조 1항

С	가맹점사업자가 기	^ㅏ 맹점운영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형사 관	련 범죄를	저지른	35조 1항
	경우							32조 1원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o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o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5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5조 2항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 할 수 없게 된 경우	35조 2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5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 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 한 경우는 제외한다.	35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5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o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5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o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 여부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ㅇ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o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사업자가 3개월 전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이전 완료	므이 다ル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양수가맹비 (₩10,000,000<부가세별도>)와 교육비(₩5,000,000<부가세별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수인은 신규 가맹계약과 동일한 가맹비를 추가로 당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o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신청과 함께 가맹점의 집기, 설비, 시설물, 인테리어 등의 점검을 의뢰하고 교체·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보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o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가맹점운영권을 대리로 행사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 o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능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와 동일	교육수료 및 교육비 납입
대리행사	불가			
업무위탁	불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o 당사는 존속기간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아메리카요가 (America Yoga) 가맹사업과 동일한 영업행위(요가관련 사업 (가맹점 단독 지도자 자격증/수료증 발급 및수업 진행) 또는 체형교정 관련 사업, 체중감량 상품의 판매, 휘트니스 내 요가 영업 등을 포함)를 금지하며, 계약종료 후 1년동안 가맹점으로부터 10km 이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소재지로부터 10km 이내에서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요가, 체형교정 관련 사업, 체중감량 상품의 판매, 에어로빅, 휘트니스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 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ㅇ 당사는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7:00 ~ 23:00	주 5일 이상	문의: 당사(02-516-9999)

-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o 귀하는 무단으로 휴업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당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o 귀하가 부득이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에게 휴업개시 희망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o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제한없음	-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	-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o 당사는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 o 귀하는 계약기간 동안 회원정보, 매출정보, 기타 가맹점 운영현황을 당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영관리 시스템(ATOS)를 사용하여야 하며, 당사는 ATOS를 통해 귀하의 매장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관리 하고 있습니다.
- ㅇ 점검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공지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ㅇ 당사는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	비율	분담 절차	비고	
丁世	9T 9H	본사	가맹점	군급 글시	미끄	
	상품광고		광고비 80%	게칭 고그 그매저이 참여		
광고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 20%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없음	세시(경세시)		

- o 당사는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판촉을 가맹점사업자들의 동의를 받아(광고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50% 이상, 판촉의 경우에는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 시행할 수 있으며, 활동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의 소재, 매체, 횟수, 시행일자 등 세부내용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촉의 경우에는 찬성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광고와 판촉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ㅇ 귀하는 인터넷 공통홍보비로 매월 ₩550,000원<부가세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ㅇ 판촉의 경우, 기획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판촉물 구입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o 전국단위 광고의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부담액 총금액을 가맹점 매장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o 광고·판촉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본부 또는 당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o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o 귀하는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가맹사업 운영상 제공받은 경영노하우와 영업규정,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영업규정 등 각종 자료를 임의로 인쇄, 복사, 분리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 o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o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제31조 손해배상

- ① 을이 제21조(물품 등의 주문 및 관리), 제28조(영업비밀유지의무),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4조 2 손해액의 추정 등'에 의거 규정한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갑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비용은 법무비용을 포함하여 갑이 을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
- ② 본 계약이 제35조(계약의 해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을 또는 을의 직원 등의 귀책사유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지체 없이 갑에 게 통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내란, 정부의 규제, 노동쟁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해 서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 불능이나 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⑤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1항에 규정된 영업표지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지연보 상금(지체 일수 × 1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⑥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에서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공휴일이 끝나는 날의 익일까지 대금을 입금한다.
- ⑦ 을이 갑이 정한 아메리카요가의 판매규정(MPL)을 지키지 않거나, 을의 센터 회원이 서비스 및 운영에 대한 불만으로 을이 신속히 대응하지 않아 갑에게 클레임 또는 중재 처리하는 경우 브랜드훼손과 전 센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⑧ 당사나 당사의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매출감소 등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o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 • 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29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8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또는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체결	D-28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6~25(2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11~2(10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o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o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o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o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o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o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 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상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경우 주는 경우	o 간판교체 비용 o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경우(공사계약서 등 공사계약서 등 공사계약에 있 → 이 한 점 이 이 부 의 에 가맹점 이 한 경우 이 한 경우 이 한 경우 이 한 경우 이 가맹점이 하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액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o 당사는 판촉행사 시 인력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o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1. 상품에 따른 마케팅 방 법 등 경영지도 2. 해당 지역의 특성과 시 장동향 분석에 따른 개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 우 가맹점에 방문하거나 유선상으 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당사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의 운영방안 지도 3.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 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 결을 위한 경영지도	필요 시 가맹본부에 요청하고 가맹 본부는 경영지도를 위반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이를 귀하가 동의 하면 진행함	가맹점사업자 부담(실비)	(02-516-9999)

4. 신용 제공 등 내역

ㅇ 당사는 귀하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o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안정화	가맹점 직원 채용 시	채용 후 요청 시	ᄀᄔᄜᆛᄀᆘ안ᄀᆝ가	2일간	
교육지원	위탁교육 지원	(상시)	가맹계약기간	(전산,영업,홍보	

				교육진행)	
가맹점	장기가맹점	3년 이상	기메케이터기기	재가맹비	
유지	재가맹비 면제	가맹계약 유지	가맹계약기간	연 200만 면제	
추가 출점	다수(2개이상)	2개 매장이상		2개 매장부터	
	매장 운영시 재가맹비		가맹계약기간	재가맹비 50%	
지원	할인	운영		할인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ο 당사는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업무 매뉴얼 Basic(요가 및 실무전반 교육) Sales(판매,상담,홍보 등 영업 교육) Service(고객서비스, 회원관리 교육) Operation(지점운영, 직원관리, 프로그램 교육) 운영 실습, 요가 기본 전산(POS, AIVY, APOSTURE) 	이론/실습 집단 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요가 실습 신 운영 매뉴얼	이론/실습 집단 강의	본사 지정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o 귀하가 아메리카요가(America Yoga)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이론교육 2일	5,500 (최초 가맹비에 포함)/ 가맹점사업자와 직원1인 금액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3주(3일, 12시간)	추후 통보	본사 지정 교육

○ 신규교육은 가맹점사업자와 직원 1인의 금액이며, 추가 인원 발생시 1인 당 일금오십만원 (₩500,000)<부가세별도>의 비용이 추가됩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o 귀하가 기한 내 신규 교육 또는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공급중단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불참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대문역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27 3층
3	서울	홍대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66, 12층
5		석계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 17. 월계빌딩 4층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약 5년 2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262,372	-

▶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2-516-9999)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 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1. <u>아메리카 요가 MPL(master price list)</u>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 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 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판매규정 [아메리카 요가 추가 혜택 규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024년, 2023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022년>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08.1.31>

(앞 쪽)

가맹금 예치 신청서			처리기간				
			기궁금 에시 선정시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
71.00	상호명(영업표지)		(아메리카. 3가(Ame	요가 rica Yoga))	
가맹 본부	성명(대표자)				윤종혁		
	주소(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심	Ì일대로17	길 51, 7층(·	관철동)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맹금을 예치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	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귀하 지점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증 (가맹희망자 보관용)

본인은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자필로 작성하여 정보공개 서 및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사실을 확인합니다.

H	및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수령자 (인)

항목		자필확인 (서명/인감)			
브랜드 명					
가맹본부명					
제공일시					
제공받은 장소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문서에 기재된 인근가맹점 수					
수령자 관련	주소				
	전화번호				
제공받은 사실 확인		과 같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1부 및 인근가맹 르를 제공받았습니다)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1부

<제공자 확인란>	
가맹본부	_는 가맹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이상과 같이 <u>가망</u>
<u>희망자</u> 에게 20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각 1부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	니다.

담당자 :

(인)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확인증 (가맹본부 보관용)

본인은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자필로 작성하여 정보공개 서 및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사실을 확인합니다.

서 및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수령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수령자 (인)

항목		자필확인 (서명/인감)			
브랜드 명					
가맹본부명					
제공일시					
제공받은 장소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문서에 기재된 인근가맹점 수					
수령자 관련	주소				
구 6시 전단 	전화번호				
제공받은 사실 확인 (기재례: 이상과 같이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1부 및 인근가맹 점현황문서 1부를 제공받았습니다)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1부

<제공자 확인란>	
가맹본부	_는 가맹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이상과 같이 <u>가망</u>
<u>희망자</u> 에게 20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각 1부를 제공하였음을 확인합니	니다.

- 48 -

담당자 :

(인)